

「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5. 7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대상 규정(안 제4조)
-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·단체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·운영(안 제6조)
- 시설의 위탁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신중년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사업 및 대상)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추진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함.
- 안 제5조(재정지원 등)에서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내용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(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·운영)에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시설의 위탁)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노후준비 지원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·

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 ·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불임 입법례

□ 관내 1건 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[관외 54건]